의안번호	제831호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의결사항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전홍표·김태웅·백승규·심영석·백태현·이천수 김상찬·공창섭·박성원·김상현·한은정·박선애 이헌순·문순규·조영명·최희정·박현재·박춘덕 이우완·김경희·이종화 의원
발의연월일	2021. 10. 15.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1

발의연월일 : 2021. 10. 15.

발 의 자 : 전홍표·김태웅·백승규·심영석·백태현·이천수 김상찬·공창섭·박성원·김상현·한은정·박선애 이헌순·문순규·조영명·최희정·박현재·박춘덕 이우완·김경희·이종화 의원(21명)

1. 제안이유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개발·보급·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에너지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에너지 이용시설”을 “에너지이용 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 이용”을 “에너지이용”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알려 주어야”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해 노

력하여야”를 “위하여 노력해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차례에 한정하여”를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과장으로”를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로, “담당주사”를 “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과 사무를 수행한다”를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에너지 이용”을 “에너지이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을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집하고”를 “소집하고,”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해서는”을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앞에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을 “제5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제2항제8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으로 하여금”을 “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 절약과”를 “에너지절약과”로, “에너지 절약을”을 “에너지절약을”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에너지 절감”을 “에너지절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

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려하여야”를 “장려해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지도·감독하여야”를 “지도·감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단계”를 “허가 단계”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을 “건축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도하여야”를 “유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로 하여금”을 “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해 노력하여야”를 “위하여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 앞에 “제5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을 “제6장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려하여야”를 “장려해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 본문 중 “시장은 법 제2조제3호”를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을 “보조금을 지원할”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차례에 한정하여”를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하여 설치공사”를 “설치공사”로, “없어,”를 “없어”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4조) 중 “점검·유지·보수하여야”를 “점검·유지·보수해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 앞에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에너지 이용”을 “에너지이용”으로, “금융·세재상”을 “금융·세제상”으로,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 이용”을 “에너지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8. ---------- ------ 에너지이용 시설-----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③ ----- 에너지이용---------- ----------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노력해야 ----. ④ ---------- 협조해야 ----. ⑤ ----------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협력해야 ------. ② ---------- 노력해야 ----. ③ ---------- 협조해야 ----. ④ ----------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 ---------- ---------- 협조해야 ------.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 ---------- ---------- 협력해야 -----.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 ---------- -------- 노력해야 -----.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
④ 시민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 ---------- 위하여 노력해야 --.
제8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 차례만 ---------- -.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에	⑤ ---------- ---------- ------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

너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소관 담당주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기능) ----------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3. 에너지이용----------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 ---------- ----------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 미리 ---------- --.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 ----- 소집하고,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삭 제>
	<삭 제>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삭 제>
	제14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 수당---------- <단서 삭제>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신 설>	
	제4장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제15조(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제5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제15조(지역에너지계획) ① (생 략)	제17조(지역에너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 위하여 ---------- ----------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 기관이 ---- ----------.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 에너지절약과 ---------- --- 에너지절약을 ---------- ---------- 준수해야 -----.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1. ---- 에너지절감 ---------- ------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2. ---------- ----------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② ---------- 권장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④ 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제·개정 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 협의해야 ----.
제1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②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설---------- ---------- 협력해야 ----.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 ---------- ---------- 장려해야 ----.
제18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 ---------- ---------- ---------- ---------- ---- 지도·감독해야 ----.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허가 단계---- ---------- ---------- ---------- 건축위원회가 ---------- ---------- ----------.
③ 시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 ---------- ------- 유도해야 -------.
④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	④ ---------- ----------

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 ---------- ---------- -------- 해야 -----. ------- ---------- ---------- --.
⑤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 ---------- ---------- 충족해야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이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 ---------- ---------- --- 노력해야 -------.
②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 ---------- ---- 노력해야 ------.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을 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 ---------- ---------- --- 사업자에게 ---------- ----------.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위하여 노력해야 ---.
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 권장해야 ----.
제5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제6장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제20조(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① ---------- 추진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 장려해야 ------.
제2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	제2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 ---------- 보조금을 지원할 ----------. ---------- ------.
제2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 - 제23조---------- ---------- ---------- - 환수해야 한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않은 ------
2.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 ----------. ---------- ------ 차례만 ---------- -------.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 설치공사---------- 없어 ---------- -------
제23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	제26조(사후관리 등) ---------- ---------- ---------- -- 점검·유지·보수해야 ---------- ----------

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해야 -----.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25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위하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세재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재정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 등) ① ------ 에너지이용 ---------- 금융·세제상---------- ---- 강구해야 -----.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용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	② ---------- 에너지이용----------

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8조·제29조 (생 략)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제31조 (현행 제28조 및 제29조와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

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 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4. 5. 1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4. 5. 15.]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하는 경우[전문개정 2014. 5. 1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 · 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전문개정 2014. 5. 15.]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 단체 · 법인 ·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

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5. 15.>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20. 11. 17.>
4. “에너지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11. 17.>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9.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건물부문”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수송부문”이란 도로에서의 교통 및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한다.<개정 2020. 11. 17.>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사회건설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5.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제7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창원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시 의회 의원, 시 공무원, 건축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책 자문 등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제15조(지역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창원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7.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창원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한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6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구입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승용차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

례의 제·개정 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⑤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필요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이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을 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제20조(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17.]

제2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 11. 17.]

제2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11. 17.]

제23조(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1. 17.]

제24조(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17.]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25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에

너지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 및 컨설팅, 연구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17.]

제26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절약 및 각종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본조신설 2020. 11. 17.]

제2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세재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재정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용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시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전기·가스 등을 전년도 동기 대비 절약률에 따라 차등하여 상품권·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에너지마일리지 제도나 에너지절약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공공기관·단체 등에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 업소, 학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나 홍보·안내 등을 할 경우에는 부채, 컵, 볼펜 등의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11. 17.>]<개정 2020. 11. 17.>

제28조(표창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

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 11. 1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11. 17.>]

부칙 〈2010. 7. 1 조례 제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마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진해시 그린에너지시티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 까지 생략
〈22〉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23〉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404호, 202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전홍표 의원)

1. 의회사무국-9486(2021.9.23.)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개정 개요

조 례 안	부 서 검 토 의 견	발 의 자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 관련법령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부서 의견 우리시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사업 창출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 홍 표 의 원

붙임. 1. 조례안 부서 검토보고서 1부.
2. 조례안 부서수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창 원 시 장

주무관	정은주	주무관	강혜영	기획관	전결 2021. 10. 12. 김종필
협조자					

시행 기획관-12673 (2021. 10. 12.) 접수 의회사무국-10049 (2021. 10. 12.)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joo1650@korea.kr / 비공개(5)

요 약 서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검토 보고

☐ 조례안 발의개요

○ 발 의 자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

○ 조례안명 :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시기 :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제안이유 :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개발·보급·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 관계법령

- 「에너지법」 제4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및 제27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서 검토의견 : 조례 개정 타당

○ 상위법 저촉 여부 : <u>저촉사항 없음</u>

○ 우리시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시민체감형 지역에너지 사업성 창출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전홍표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내용

○ 지역에너지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문 신설

▸ 지역에너지 설치 등 : 조례안 제15조

▸ 지역에너지 위탁운영 등 : 조례안 제16조

○ 상위 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조례안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 조례 내용 명확화 및 간결화를 위한 조문 수정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검토 보고

❖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이 발의 예정인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Ⅰ 의원발의 조례개정 개요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제66조(의안의 발의)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 「에너지법」 제4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및 제27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 발 의 자: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
○ 상정시기: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제안이유: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개발·보급·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에너지센터 수행 업무
-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 에너지 교육 · 홍보지원 및 관리
-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에너지 관련 국내 · 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 **에너지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Ⅱ 검 토 내 용

❑ 관계법령 저촉 여부: **저촉 사항 없음**

❑ 타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에너지조례 제정 현황: 145개소(광역 15, 기초 130)

에너지조례 제정현황(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45	15	130	21	8	1	9	2	4	2	30	6	7	10	7	10	5	8

○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자체 현황(에너지센터 포함 조례 有)

구분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16	4	12
유사 조례	대전	1 (기초1)		대덕구
	광주	2 (광역1, 기초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울산	1 (기초1)		남구
	경기	3 (광역1, 기초2)	경기도	광명시, 안산시
	강원	1 (기초1)		춘천시
	충북	1 (기초1)		청주시
	충남	3 (광역1, 기초2)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전북	2 (기초2)		군산시, 전주시
	경북	1 (기초1)		봉화군
	경남	1 (광역1)	경상남도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 선정됨에 따라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창원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필요**

⇒ 시범사업 지자체 17개 중 창원시 포함 7개 지자체 에너지센터 관련 조례 개정 중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원안과 같음

○ **의원발의 조례 주요 개정사항**

△ 창원시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운영 등 관련 사항 신설 : 원안과 같음

의원발의안	검토의견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제15조(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안과 같음

의원발의안	검토의견
제16조(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원안과 같음

△ 조례 조문의 간결화, 명확화와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문 수정

❑ 재정부담 : **200백만원/년**

○ 에너지센터 업무 및 운영방식(직영,민간위탁)에 따라 운영비 차이 발생
"타지자체 조사결과 직영시 220백만원, 위탁운영시 333백만원 사업비 평균 소요"

Ⅲ 종 합 의 견

○ 부서의견 : 조례개정 타당

○ 상위법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재정부담 : 200백만원/년

○ 우리시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시민체감형 지역에너지 사업성 창출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전홍표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조례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이용 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9. ~ 12. (현행과 같음)	원안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시책수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

개 정 안	검 토 의 견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④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③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④ 사업자는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④ 시민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제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원안과 같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원안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 ⇒ 위원회의 기능 명확화를 위하여 조문 수정
1. ~ 2. (현행과 같음)	
3.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원안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원안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원안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시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수정 ⇒ 회의록 작성 주체는 시장이 되어야 하며, 순화용어 사용 및 불필요 사항 삭제 내용과 회의록 작성시 포함사항은 불필요하여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안과 같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4장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제15조(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신설)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6조(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원안과 같음 (신설)
제5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원안과 같음
제17조(지역에너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원안과 같음 제15조, 제16조 에너지 센터 관련 조항 신설함에 따라 종전의 제15조부터 제29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로 수정.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원안과 같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원안과 같음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원안과 같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3.·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④ 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제·개정 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제19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원안과 같음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20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원안과 같음
③ 시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④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시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원안과 같음
⑤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21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이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②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원안과 같음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제6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22조(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원안과 같음
제2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이므로 불필요한 내용 수정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해야 한다."수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의 지원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원안과 같음
2.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원안과 같음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원안과 같음
제25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원안과 같음
제26조(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유지·보수해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시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2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원안과 같음
제28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원안과 같음
제2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재정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원안과 같음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용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원안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제31조 (현행 제28조 및 제29조와 같음)	원안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에너지센터 수행업무에 따라 비용 발생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에너지센터 수행업무와 운영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 발생

나. 추계 결과 : 20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되어 국비 확보 (국비 1억원 시비 1억)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0	
신재생에너지 DB구축	65	
민간주도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40	
창원시만의 특색있는 그린수소 로드맵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5	
지역 사회적경제 연계 태양광 설비 전주기 사후관리	60	
지역에너지효율 협력네트워크구축	30	

- 기초자치단체 기준 전국 6개 지자체(직영3, 위탁3)에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행업무와 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사업비 차이 발생

다. 재원조달방안

- 신·재생에너지 사용 전환, 지역에너지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요청 예정

3. 작성자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 과장 김부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00,000					100,000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100,000					100,000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					100,000
	보조금	100,000					1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전홍표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 10. 7.(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 임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주무관 유혜리 입법지원담당 이행정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2021. 9. 23. 곽기권

협조자 경제복지여성 전문위원 강웅기

시행 의회사무국-9486 (2021. 9. 23.)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3 팩스번호 055-225-4743 / hyeri0815@korea.kr / 비공개(5)

붙임 **검토의견 조회안**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전홍표 의원

1. 제안이유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개발·보급·확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에너지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에너지 이용시설”을 “에너지이용 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 이용”을 “에너지이용”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해 노력하여야”를 “위하여 노력해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차례에 한정하여”를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과장으로”를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로, “담당주사”를 “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에너지 이용”을 “에너지이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을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집하고”를 “소집하고,”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비치해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해서는”을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앞에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을 “제5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제2항제8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으로 하여금”을 “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 절약과”를 “에너지절약과”로, “에너지 절약을”을 “에너지절약을”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에너지 절감”을 “에너지절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려하여야”를 “장려해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지도·감독하여야”를 “지도·감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단계”를 “허가 단계”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을 “건축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도하여야”를 “유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로 하여금”을 “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해 노력하여야”를 “위하여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 앞에 “제5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을 “제6장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려하여야”를 “장려해야”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 본문 중 “법 제2조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차례

에 한정하여”를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하여 설치공사”를 “설치공사”로, “없어,”를 “없어”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4조) 중 “점검・유지・보수하여야”를 “점검・유지・보수해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 앞에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에너지 이용”을 “에너지이용”으로, “금융・세재상”을 “금융・세제상”으로,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 이용”을 “에너지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 이용시설에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투자한 후 이 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9. ~ 12. (생 략)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에너지이용 시설----- ---------- ---------- ---------- ----------. 9.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 수립·시행해야 -----. ② ---------- ---------- 마련해야 -----. ③ ----- 에너지이용---------- ---------- 노력해야 ----.

④ 시장은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 협조해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 협력해야 ------.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력해야 ----.
③ 사업자는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 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 협조해야 ----.
④ 사업자는 학교·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 - 에너지이용 합리화 ---------- 협조해야 ------.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제6조(시민의 책무) ① ----------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협력해야 -----. ② ---------- ---------- ---------- ---------- -------- 노력해야 -----. ③ ---------- ---------- -------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 ④ ---------- ---------- ---------- ---------- 위하여 노력해야 --.
제8조(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생 략)	제8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차례만 ----------. ⑤ ---------- ------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 소관 담당주사---.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제9조(기능) ----------. 1.·2. (현행과 같음)

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3. 에너지이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미리 ----------.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 소집하고,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 작성·비치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 수당----------. <단서 삭제>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신 설>	제4장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제15조(에너지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제5장 지역에너지계획 및 에너지시책
제15조(지역에너지계획) ① (생 략)	제17조(지역에너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 위하여 -----------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이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으로 하	③ ---------- 기관이 ----

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④ ---------- ---------- ---------- ----- 해야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4. (생 략)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 에너지절약과 ---------- ---------- --- 에너지절약을 ---------- ---------- ---------- 준수해야 -----. 1. ---- 에너지절감 ---------- ------ 2. ---------- ----------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3.·4. (현행과 같음) ② ---------- ---------- ---------- 권장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④ 시장은 건축, 도로,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제·개정 시에는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 협의해야 ----.
제1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 협력해야 ----.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 장려해야 ----.
제18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제20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 ---------- ---- 지도·감독해야 ----.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허가 단계---- ---------- ---------- ---------- 건축위원회가 ---------- ---------- ---------- ----------.
③ 시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 ---------- ------- 유도해야 -------.
④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④ ---------- ---------- ---------- ---------- ---------- -------- 해야 -----. ------- ---------- ---------- --.
⑤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⑤ ---------- ---------- ---------- 충족해야 ---

한다.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이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 ---------- ---------- --- 노력해야 -------.
② 시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 ---------- ---- 노력해야 ------.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을 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 ---------- ---------- --- 사업자에게 ---------- ----------.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 ---------- ---------- 위하여 노력해야 ---.
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 ---------- ---------- ---------- 권장해야 ----.
제5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제6장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촉진 및 지원
제20조(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① ---------- ---------- -- 추진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③ ---------- ---------- ---------- ---------- ----- 장려해야 ------.
제21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3조(보조금 지원) ----- 제2조제3호---------- ---------- ---------- ---------- ---------- ---------- ---------- ----------. ----- ---------- ------.
제2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 - 제23조---------- ---------- ---------- ----------.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않은 ------
2.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 ---------- ------ 차례만 ----------.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 설치공사---------- 없어 ----------
제23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사후관리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점검·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에너지생산량 등 시장이 자료를 요구할 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관리 등) ---------- ---------- -- 점검·유지·보수해야 ---------- ---------- ----- 제공해야 -----.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7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제25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 및 관련 대학 등에 자문, 협력, 컨설팅,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위하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8조(에너지 백서 발간) ① ---------- ---------- ---------- ------ 위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세재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재정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용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9조(재정지원 등) ① ------ 에너지이용 ---------- ---------- ---------- 금융·세제상---------- ---------- ---- 강구해야 -----. ② ---------- 에너지이용----------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제29조 (생 략)	제30조·제31조 (현행 제28조 및 제29조와 같음)